

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

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3월 13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낭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에 의거 당직근무를 하는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당직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.

II. 주요골자

- 가.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수당을 1인당 1회 “35,000원”에서 “50,000원”으로 인상함. (안 제4조)
- 나. 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 및 법명 표기법에 맞추어 표기함.

III. 검토의견

- 지방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고(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),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는 현재 당직근무자 1인당 1회 3만 5천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,
- 서울시의 경우 3월중에 5만원으로 인상 예정으로 있고,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난해 10월 성동구가 처음 인상한 이후 10개 구가 이미 5만원으로 인상하였고, 현재 5개구가 상반기 중에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자치구가 5만원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추세이므로, 직원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고려할 사안으로 봅니다.

- 참고로 동 인상안을 4월 1일부터 적용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2,315만원 정도(월 257만원 내외)입니다.

IV. 관계법령

○ 지방공무원법

第46條 (實費補償등) ①公務員은 報酬를 받는 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職務遂行에 所費되는 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

제4조(당직의 구분)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.

②일직은 공휴일에 두며,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.

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.

제6조(당직근무자의 편성) ①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치안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동사무소의 경우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별표]

당 직 근 무 자 편 성

구 분		숙 직		일 직	
부서별					
구	평 상 시	당직사령(계장급)	1명	당직사령(계장급)	1명
		당직보좌관(7급)	1명	당직보좌관(7급)	1명
		당직원	4명	당직원	4명
청	연 휴 비 상 시	당직사령(계장급)	1명	당직사령(계장급)	1명
		당직보좌관(7급)	1명	당직보좌관(7급)	1명
		당직원	4명	당직원	4명
동		당 직원	2명	당 직원	2명

자치구별 당직수당 인상추진 현황

(단위 : 원)

구 별	당직수당 현황(2006. 3. 10현재)			비 고
	현 행	지급근거	인 상 개 획	
종로구	35,000	조례	3월 임시회시 조례개정 추진	
중 구	35,000	조례	4월 임시회시 조례개정 추진	
용 산	50,000	규칙	2006. 1. 1 인상	
성 동	50,000	규칙	2005. 10. 14 인상	
광 진	35,000	규칙	자치구 1/2이상 인상시 시행 예정	
동대문	35,000	조례	4월 임시회시 조례개정 추진	선담요원 2교대
중 랑	50,000	조례	2006. 1. 27 인상	
성 북	35,000	조례	미 정	전담요원 3교대
강 북	35,000	규칙	미 정	
도 봉	35,000	규칙	미 정	
노 원	35,000	조례	추경 반영시 시행	
은 평	35,000	조례	미 정	
서대문	50,000	조례	2006.1.27 인상	
마 포	50,000	조례	2006.2.1 인상	수방,제설요원 포함
양 천	35,000	조례	3월 임시회 조례개정 추진	
강 서	50,000	조례	2006. 2. 27 인상	운전원 재택근무
구 로	35,000	조례	추경 반영시 시행	
금 천	35,000	조례	추진 중 (예산팀 미협의)	
영동포	35,000	규칙	추경확보 후 시행	
동 작	35,000	조례	향후 추경시 반영 고려	
관 악	50,000	규칙	2006. 3. 1 인상	
서 초	50,000	조례	2006. 3. 8 인상	
강 남	35,000	조례	추경 반영시 시행	
송 파	50,000	조례	2006. 1. 1 인상	
강 동	50,000	규칙	2006. 1. 1 인상	